

# 山林法中改正法律案 經濟長官 會議通過

## 林野賣買證明制 – 山主反對 불구하고 原案대로

그동안 山林廳에서 林野賣買證明制 때문에 產苦를 겪고 있었던 山林法中 改正法律案이 최근 經濟長官 會議을 通過하고 法制處에서 審議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主要改正 骨子는,

- 市長·郡守가 山林所有者에게 造林·育林 등 山林開發義務를 賦課하고 이에 따라 山林所有者가 開發하던 一般指定開發制度를 廢止하여 山林所有者의 自律經營體制로 轉換함 (案 第21條～第38條)
- 保全林地를 他用途로 轉用하기 위하여 保全林地 轉用許可를 받은 境遇 그 林地内에서는 別途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立木伐採 山林毀損 등을 할 수 있도록 節次를 簡素化함. (案第 90條)
- 山地資源化를 促進하고 木材自給率을 向上하기 위하여 林業振興促進地域을 指定하여 이 地域의 山林經營에 대하여는 資金과 技術을 集中支援할 수 있도록 함 (案第 28條～第32條)
- 山林안에 休養林과 樹木園을 造成할 수 있도록 하여 國民休息空間과 自然學習 教育場으로 活用하도록 함. (案第34條～第37條)
- 山地의 利用度 提高와 投機抑制를 圖謀하기 위하여 林野를 賣買할 境遇, 買收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林野賣買證明을 發給받도록 하고 林野賣買證明은 買收者가 山林經營 등 實需要者인 境遇에 限하여 發給하도록 하며  
買收한 林野를 5年以内에 賣渡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山林經營이나 公用·公共用地 確保를 爲하여 他에 優先하여 買收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11條～第 112條의 2 )

그런데 山林廳은 그동안 同法 改正案을 마련함에 있어 公聽會, 有關人士들과의 懇談會등 여러차례 회의와 意見을 청취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가장 關心의 초점이 되어왔던 林野賣買證明制 實施에 많은 反對에 부딪쳐 苦心을 하였다.

이번에 經濟長官 會議에는 同條項이 당초 原案대로 插入된 채 통과되어 不動產 投機抑制와 관련된 他法律案과 二重三重으로 規制되는 結果를 招來케 됨으로써 많은 山主의 反對與論이 비등할것이 예상되며 금후 國會에서의 立法審議時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本會에서도 그동안 協會의 公式節次를 通한 反對意見을 여러차례 개진한 바 있었으나 관철되지 않으므로써 이번에는 最終的으로 各 政黨에 反對 意見書를 提出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意 見

우리 協會는 山林法 改正 法律案 第111條 林野賣買證明制를 積極反對한다.

## 2. 事 由

- 가. 우리는 政府의 不動產 投機 抑制 施策을 根源의으로 反對하고자 함은 아니며 肯定의으로 受容코자 함이나 山林은 垦地나 一般 土地와는 달리, 누가 所有하느냐 하는 所有概念보다는 누가 保全 林地를 資源化하느냐에 보다 優先을 두어야 하며,
- 나. 現行 國土管理 利用法에 依한 土地去來許可 對象地域이 全國土의 12.7% (1,260千ha) 申告對象地域이 67.5% (6,690千ha)로 全國土의 80.2% (7,950千ha) 가 기히 現行 制度下에서 規制되어 있고 나머지 20% 程度만이 規制되지 않은 狀態임.
- 다. 이를 놓고 볼때 全國土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山林面積 6,499千ha 中 規制 對象과 關聯이 없는 國有林 1,320千ha, 公有林 486千ha를 합하면 1,806千ha로서 이것만으로도 全國土의 18.2%에 該當 되므로 前項에서 提示한 規制되지 않은 面積 20%는 이들 國有林과 公有林이 거의 全部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純粹 私有林은 山林 經營만을 할 수 밖에 없는 山間奧地林一部를 除外하고는 기히 全體 山林面積이 現行制度下에서도 規制되어 있는 狀態임.
- 라. 뿐만 아니라 現在 政府에서 立法 推進中에 있는 土地 公概念과 關聯한 法律(土地超過利得稅法案, 土地所有上限制, 開發利益환수제 等) 法案 마련과 綜合 土地稅等 各種 方法으로 不動產投機抑制對策을 強化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때 이들 法律만으로도 林野에 對한 投機抑制는 充分하다고 半斷됨.
- 마. 또한 不動產投機가 林野쪽으로 加速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山間奧地林이 大部分인 保存林地가 아니고 都市周邊 農用林等 他用途로 轉用이 容易한 準保存林地에 該當 하는 것이며,
- 바. 林業經營 側面에서 考察할 때 山林은 經營規模가 經濟的 單位로의 大型化로 指向되어 야 하며, 이를 爲하여는 林野賣買 去來는 自由로워야 하고 이는 林業을 活性化 시키는 捷徑이기도 함.
- 사. 林野賣買證明制가 實施될 境遇 實需要者 判斷의 어려움은 물론, 判斷過程에서의 非理를 惹起 할 수 있는 原因提供等과 더불어, 지금 現在에도 賣買를 해야 할 境遇, 許可, 申告等을 行하여야 하는 地域이 大部分이므로 아무 實效 없이 2重, 3重으로 規制되는 結果가 되어 民願의 惹起와 行政의 複雜, 亂脈을 招來케됨은 물론 林業만이 萎縮될 것임.
- 아. 또한 山林法은 經營助長為主로 緩和되어 助長法律이 되어야 하는데 山林法에 規制條項을 新設하고자 함은 法體系上으로 보아도 事理에 맞지 않음.

## 3. 結 論

- 가. 山林에 投資意慾을 鼓吹시키기 爲하여는 最少限의 規制로 족하고 保存 林地에 對한 去來 規制는 排除 되어야 함.
- 나. 現山林法上의 造林命令制를 보다 強力히 強化 施行만 해도 放置山林은 規制 할 수 있음.
- 다. 不動產 投機 對策과 關聯한 問題는 他法律에서 다루고 山林法上에서는 排除되어야하며,
- 라. 投機對象인 準 保存林地와 山林만을 가꾸어야하는 絶對 林地인 保存林地와는 確연히 区別하여 保存林地에 對하여는 規制對象에서 除外되어야 함. ★